

6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일반택시 기사]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택시 기사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예산 범위 내)

3 지원대상 및 요건

- 1인당 300만원 지원대상(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법인)택시 기사
 -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공고일(2022. 8. 1.) 현재 도내 일반(법인)택시회사에 근무 중인 자
 - 2) 2022.6.15일(이전포함)부터 공고일 현재(2022. 8. 1.)까지 30일 이상 일반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고용노동부 6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시행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2-2077(2022. 6. 3.)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자
- ※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4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해당 택시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2>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붙임3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2. 8. 1.(월) ~ 8. 12.(금) 18:00까지

신청접수 (택시회사)	⇒	1차 심사 (택시조합)	⇒	2차 심사 (도)	⇒	지원금 지급 (도)
8. 1.(월)~8.12.(금)		8.16.(화)~8.18.(목)		8.19.(금)~8.23.(화)		8.24.(수) 예정

5 지급 제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
 -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붙임2 참고)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52)를 통해 문의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퇴직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비해당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제주도)	
⑩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 아래 약약인은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약약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신청인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수수료
제출서류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가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에게 전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2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총괄현황
 [* Excel 파일로 작성]

☐ 택시회사 현황

회 사 명		작성자(담당자)	(서명)	연락처(HP) :
		확인자(대표이사)	(직인)	사무실 :

☐ 긴급고용안정금 지원 신청자(운수종사자) : 명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HP) “-”제 외	입사일 (재입사일)	지원금 지급계좌			
					수령자 구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1	홍길동	650814-1234567	01012345678	2022-06-14	본인	홍길동	새마을금고	**-**-*****
2					직계가족			
3					대리인			
4								
5								
6								
7								

택시조합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가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2.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은 도내 일반택시운송업자에게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지원 내용

- 면허대수 당 50~60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함)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2022.6.13.)호]에 따라 기 지원받은 손실보전금액을 제외하여 차액을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매출액 감소 요건 >

- **코로나19 이전('19년) 매출액과 비교하여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 증빙 자료: ① 국세청 과세자료(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②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매출액 자료

- 2) 공고일(2022. 8. 1.)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2> 참고
-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업체 명단(붙임3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2. 8. 1.(월) ~ 8. 12.(금) 18:00까지

신청접수 (택시조합)	⇒	1차 심사 (택시조합)	⇒	2차 심사 (도)	⇒	지원금 지급 (도)
8. 1.(월)~8.12.(금)		8.16.(화)~8.18.(목)		8.19.(금)~8.23.(화)		8.24.(수) 예정

5

지급 제외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전세버스업체, 버스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청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붙임2 참고)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예) 부지급 통보(8.22(월))→이의신청(8.23(화)~9.2(금))
다만,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52)를 통해 문의

일반택시운송사업체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면허일자:
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령여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2022.6.13.)회에 한함 해당 () 비해당() (수령금액: 원)	
⑦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비해당()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제주도)	
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 아래 약약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약약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신청인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수수료
제출서류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가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제7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에게 전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2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

일반택시운송사업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총괄현황
[* Excel 파일로 작성]

☐ 택시회사 현황

회 사 명		작성자(담당자)	(서명)	연락처(HP) :
		확인자(대표이사)	(직인)	사무실 :

☐ 긴급고용안정금 지원 신청자(운수종사자) : 명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HP) “-”제 외	입사일 (재입사일)	지원금 지급계좌			
					수령자 구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1	홍길동	650814-1234567	01012345678	2022-06-14	본인	홍길동	새마을금고	**-**-*****
2					직계가족			
3					대리인			
4								
5								
6								
7								

택시조합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가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2.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체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전세버스업]

1 사업 목적

-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2022.7.1.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2 지급 대상

- (업체의 매출감소 요건 충족)

< 매출액 감소 요건 >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도내 등록 업체) 2022.7.1.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3 지급금액

- (지원금) 전세버스회사별 1,000만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8. 1. (월) ~ 8. 5.(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제주시 오등13길 48 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층
- 신청서류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부가가

치세 신고서 등), 각서, 법인등기부등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 명의 통장 사본)

5 지급 제외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지원금 신청일 기준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

6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2022. 8. 10.(수)부터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
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 이의신청기간: 2022년 8월 10일~8월 17일

7 부정수급 환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8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도청 대중교통과 (☎064-710-4327)
 - 제주전세버스조합(☎064-723-205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주형 제7차 전세버스업 재난긴급생활지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형 제7차 전세버스업 재난긴급생활지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중복수급 확인**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주형 제7차 전세버스업 재난긴급생활지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각 서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버스업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거짓 없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전세버스업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다 하겠습니다.

2022. . .

회사명 :

대표이사 :

(회사 직인)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합 직인)